

## 난민과 탈북자의 윤리적 문제 - 아감벤과 레비나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

이종원 (계명대학교 조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난민의 발생 원인과 난민의 종류
  - 1. 난민의 증가
  - 2. 난민의 종류
  - 3. 난민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
  - 4. 난민과 인권 문제
- III. 탈북 난민의 현실
  - 1. 탈북의 원인
  - 2. 탈북자들의 현실
  - 3. 난민지위 인정의 문제
- IV.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 1. 조예와 비오스
  - 2. 벌거벗은 생명
  - 3. 예외상태
  - 4. 호모 사케르와 난민
- V. 레비나스의 타자를 위한 윤리
  - 1. 타자의 얼굴
  - 2. 타자에 대한 책임
  - 3. 케노시스적 연대
- VI. 탈북자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방안
- VII. 나가는 말

---

• ABSTRACT •

---

The Problems of the Refugee and the North Korean defector:  
Based on Agamben and Levinas' theory

Lee, Jongwon(Keimyung University)

This research surveys the problem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through the concept 'Homo Sacer' of Agamben, and seeks the solution of this issue based on 'the ethics of the Other of Levinas'. To that end, I inspected the realistic violation of human rights that the North Korean defectors have experienced in other territories, in particular, in China. A refugee is considered to be rooted out people who have lost their base of life. They must depart from their base of life. This means they must separate from the entirety of their relations. The most urgent issue i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considered as refugees legally to protect the defectors' human rights and to guarantee their legal positions. According to Agamben, Homo Sacer is a bare life exposed to the absolute possibility of homicide, that is the object transcending the jurisdiction of both the law and the sacrifice ritual. A bare life is a life that has lost all positive relations, therefore it is considered a worthless life. In Levinas, the encounter with the face of the other reveals the ethical responsibility toward others. The face of the other is the trace of infinity. It means that the word of God could be heard by us from beyond our understanding and even our existence. To save the face of the other with diversity and vulnerability gives us new insight from the viewpoint of Christian ethics. Through the ethics of the other, when we examine the problems of North Korean defector, we find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The most desirable community is not a closed society, exposing those who are different to violence and death, but an open society coexisting and enjoying their differences peacefully and happily.

**Key words:** Refugee, North Korean Defector, Asylum, Non-Refoulment Principle, Homo Sacer, Ethics of the Other.

## I. 들어가는 말

난민문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난민은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하여 집을 떠나 자신의 국가 밖에 있으면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sup>1)</sup> 이들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처지가 된다. 나치에 의해 시민권이 박탈된 채 14년간을 무국적자로 살았던 한나 아렌트는 난민을 친구, 가족, 삶의 터전을 잃은 뿌리 뽑힌 사람으로 표현하였다.<sup>2)</sup> 이러한 뿌리 뽑힘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 상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이 맺었던 모든 관계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sup>3)</sup>

국제사회는 전쟁으로 인해 유럽전역을 유랑하던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951년 제네바난민협약을 체결하였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유럽 이외 지역의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1967년에는 난민의 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 어느 국가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발생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지중해에서 숨진 난민이 올해에만 2,643명이라고 국제이주기구(IOM)가 보고하고 있다. 내전으로 고통 받는 시리아인은 2,200만 명인데, 이 중 25만 명은 숨졌고, 760만 명은 집을 잃은 채 국내를 떠돌고 있으며, 400만 명은 주변 국가로 이주했고, 또 다

1) B. S. Chimni, *International Refugee Law* (London : Sage Publications, 2000), 1.

2) 아렌트는 나치에 의해 1937년에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1951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1-2』 (과주: 한길사, 2006), 18.

3) 양창아,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의 시작 : 배제된 자들의 관점과 정치적 경험의 회복”,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코기토』 71, 2012. 2, 353.

른 400만 명은 국경을 넘어 정착할 곳을 찾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sup>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탈북자 문제이다. 북한을 탈출한 다수의 탈북자들은 중국 등 제3국에 불법체류자로 거주하면서 경계인의 신분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는 북으로 강제 송환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고, 북한당국으로부터 체제이탈자 또는 배신자의 신분으로서 갖은 고문과 고초를 당하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탈북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인 ‘좋은 벗들’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 수가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5)</sup> 탈북자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들이다.<sup>6)</sup> 이들은 대부분 아무런 생계수단을 가지지 못한 채 한국 사회에 진입하거나 제 3국에 망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가장 취약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리는 인권의 국제적 기준에 대한 한국정부의 민감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sup>7)</sup>

탈북자를 비롯한 난민은 호모 사케르, 즉 별거벗은 생명이라 할 수 있다. 호모 사케르는 오늘날 국민이나 시민을 형성하는 기본 개념들을 근

4) 2015년 9월 2일 터키의 한 해변에서 세 살 배기 시리아의 한 소년 알란 쿠르디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난민이었던 쿠르디 가족은 에게 해를 건너 그리스로 가다가 보트가 전복되어 생명을 잃게 되었다. “난민은 존엄하다”, 동아일보 2015년 10월 28일자.

5) 2008년도 통일부 통일백서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 가운데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가 2008년 12월 기준으로 15,000명을 넘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광정래 · 이준웅, “김대중 · 노무현 정부시기 탈북자 문제에 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조선일보」 · 「한겨레」 등 5대 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53(6), 2009.12, 197.

6) 길준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10(4), 2009.11, 252.

7) 이병렬 · 김희자,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 「경제와 사회」 90, 2011. 6, 325.

본적으로 의문시하면서 숙고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들이 더 이상 국가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공존하고 협력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본 소고에서는 탈북자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고충들을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을 통해 조명하면서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를 위한 윤리’를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제3국에서 겪는 인권 유린의 실태를 살펴보고, 탈북자들이 난민으로서 인정받아야 할 당위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난민의 발생 원인과 난민의 종류

### 1. 난민의 증가

난민이란 정치적 박해나 폭력, 사회 내부적인 혼란, 자연 재해 혹은 극심한 경제적인 빈곤 등과 같은 동기로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를 떠난 사람들을 의미한다. 난민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인종적 등의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데, 갖가지 분쟁이나 갈등으로 인해 난민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51년 유엔난민기구(UNHC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지원 대상에 속하는 난민의 수는 약 백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2005년에는 대략 1,750만 명 정도였으며, 2011년에는 2,59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1년 동안 추가된 난민만도 430만

명이나 되었다. 이들 가운데 876,100명이 전 세계 각국에 망명신청을 하였다.<sup>8)</sup>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나 내전 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국내 난민과 무국적자, 기타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민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약 200여 국가 가운데 140개국이 1951년의 유엔의 난민협약 또는 1967년의 난민의정서(protocol)에 서명한 상태이다. 여기에 서명한 국가는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을 강제송환하지 않는다는 원칙(non-refoulement principle)을 존중한다.

난민 문제는 당사국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상호의존성을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 난민문제는 주변국 한 두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며, 관련국가 및 국제기구와 NGO,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기구나 회의체를 설치하여, 정보교환, 재정부담 등 국제적 연대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sup>9)</sup> 일단 난민이 발생하게 되면 완전한 해결은 어렵고 해결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8) 유엔구호 및 활동기구(UNRWA)가 지원하는 국제 난민은 약 250만 명, 실향민은 약 2,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과 난민』, (서울: 한학문화, 2005). 8. 박종일 · 이태정 · 유승무 · 박수호 · 신종화, “난민의 발생과 국민국가의 대응: 난민수용 논란을 통해 본 한국의 이주자정책”, 『민주주의와 인권』 13(1), 2013.4, 200.

9) 이신화, “세계 난민문제 해결 사례와 탈북자 문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3. 12, 35.

## 2. 난민의 종류

난민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난민과 유사한 개념이나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많다.

### 1)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난민은 발생 원인에 따라 정치적 난민, 경제적 난민, 전쟁 난민, 인도적 난민 등으로 구분된다.

#### ① 정치적 난민

정치적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그리고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위험에 처하게 될 때, 본국에서 탈출하여 타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자들을 의미한다.<sup>10)</sup> 유럽인권재판소는 1991년에 고문 또는 학대의 공포가 있는 국가에 보호희망자를 귀환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였다.

#### ② 경제적 난민

경제적 난민은 경제적 궁핍 또는 곤경을 피하기 위해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타국으로 탈출한 난민을 말한다.

#### ③ 환경난민

환경난민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촌의 이상기후(엘리뇨, 라니냐 현상 등)나 화산폭발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난(지진, 홍수, 가뭄, 토지의

---

10) 난민 보호는 적정 규약을 근거로 박해받을 위험에 처한 자들로 한정하는데, 심각한 인권 침해의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Foster, Michelle.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Socio-Economic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37.

사막화, 산림 황폐), 원전사고와 같은 인위적인 환경파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난민이 된 자들이다.<sup>11)</sup>

#### ④ 전쟁 난민

전쟁난민은 전쟁이나 내란, 또는 정치폭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피하여 타국 또는 국내의 타 지역으로 피난하여 난민이 된 경우이다. 전쟁난민은 국제인도법에서 전쟁희생자라는 관점에서 특정한 보호를 제공한다.

#### ⑤ 인도적 난민

인도적 난민은 자연재해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타국으로 도피 또는 탈출한 난민을 말한다.<sup>12)</sup>

### 2) 인정범위에 따른 분류

난민은 난민인정의 범위에 따라 협약난민, 위임난민, 사실상 난민, 케도난민, 대량난민 등으로 구분된다.

#### ① 협약난민

협약난민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의하여 난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유엔난민기구에 의해 난민지위를 인정하여 보호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11) 이용호,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52(2), 2007. 8, 316. 경제난민은 환경난민과 함께 ‘현대적 난민’ 또는 ‘21세기 난민’이라고도 부른다.

12) 고기복, “EU국가의 난민인정제도: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7(1), 2007. 6, 41.

## ② 위임난민

위임난민은 난민협약상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이들을 방치할 경우 생명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할 우려가 있어 UN난민고등판무관의 판단에 위임되어 구호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사실상 난민

사실상 난민은 개인의 합리적인 신념이 중대하게 침해받거나 외국의 점령이나 국내의 중대한 공공질서의 위협에 의해 자국을 떠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실상 난민은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sup>13)</sup>

## ④ 궤도난민

궤도난민은 박해받는 국가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길 원치 않아 비호신청을 하였지만 거부되어 접수국과 인접국 사이를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비호신청을 하는 자를 말한다.<sup>14)</sup>

## ⑤ 대량난민

오늘날 대량난민의 인정은 국제관례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유엔 난민기구는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 그들을 특별히 다루어 왔다. 실제로 대량난민방식은 난민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소말리아난민·르완다난민·알바니아난민(코소보사태)·쿠르드난민(중동), 베트남난민(아시아) 등에 적용된 바 있

13) 김수진, “무장한 세계화와 난민”,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20, 2007. 5, 190.

14) 정주신, 『탈북자 문제의 인식. 2, 탈북자·난민·UNHCR』, (대전: 프리마북스, 2011), 53.

다. 대량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특정시기에 특정의 사건으로 인하여 특정장소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대량난민부여의 실체적 요건을 전제로 한다.

### 3. 난민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

난민 문제는 난민의 발생 원인이 심각한 문제이지만, 난민의 대량유입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다. 난민의 수용에 따른 사회 문화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국제사회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이기를 꺼리게 된다.

첫째,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는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공공서비스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유입되는 난민의 수가 증가할수록 부족한 자원과 일자리로 인해 난민들은 기존 주민들과 갈등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냉전기와는 달리 최근 서구 선진국들의 난민 수용이 감소하면서 2012년 말 국제난민의 80%는 개발도상국가에 수용되고 있으며, 49개 최빈국은 240만 명의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1992년 말 약 70%의 난민이 개발도상국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부담이 많이 증가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난민들은 수용국의 GDP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sup>15)</sup>

둘째, 난민의 대량 유입은 수용국의 공중보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난민캠프는 난민의 과잉수용으로 인해 위생상태가 악화되기 쉽고, 전염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난민들이 에이즈, 말라리아, 콜레라 등과 같은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난민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에 대한 공중보건 서

15) 송영훈,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4(1), 2014. 3, 205.

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난민들이 수용국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소외될 경우, 난민들은 적대 세력이 되어 무장단체의 활동에 직접 가담하거나 간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수용국의 안보에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

#### 4. 난민과 인권 문제

최근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소수집단이나 인종에 대한 인권침해와 민족분쟁으로 인해 결과들이다. 난민은 존재의 뿌리가 뽑힌 호모 사케르, 즉 벌거벗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 아렌트는 난민 문제를 통해 민족 국가의 허구성 내지 인권 선언의 추상성을 폭로하였다. 아렌트는 난민 문제가 모든 국가들에게 하나의 예외 현상으로, 즉 정상에서 일탈한 특정 지역의 특수한 현상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런 논리로 난민을 양산하는 시스템 자체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sup>16)</sup> 아렌트의 분석에 따르면, 난민 문제는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다루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구속력이나 해결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한 민족, 한 영토, 한 국가라는 민족 국가의 틀이 사람들을 무국적 난민, 즉 민족 국가의 구성적 외부(constitutive outside)로 추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하였다.<sup>17)</sup> 즉, 민족-국가라는 추상적 구조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난민을 생산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스스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8)</sup> 오늘날에도 여전히 각 국가는 송환이나 귀화 이외에 난민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제

16)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1-2』, 502.

17) 같은 책, 501.

18) 양창아,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의 시작: 배제된 자들의 관점과 정치적 경험의 회복”, 355.

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난민들의 운명은 제3국의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아렌트가 난민 문제를 다루면서 주목했던 점은 인권이 단지 도덕적 호소로만 사용될 뿐, 아무런 권리도 없으며 처분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보호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대적 형태의 국가는 국민이라는 범주를 배타적으로 작동시키면서, 오히려 난민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아렌트는 지적하였다. 이러한 아렌트의 비판이 여전히 유효한 것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난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 III. 탈북 난민의 현실

난민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탈북자 문제이다. 탈북자 문제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과의 정치적, 외교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1993년 이전에는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서 식량을 얻어 되돌아가는 양상이었다.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이 증가하자 북한은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많은 감시 초소를 세워 경계를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이탈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북한은 인민무력부 병력을 국경지대에 증강배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공개처형 및 가족 연좌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sup>1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대량탈북이 계속되자, 북한

19) 정주신, 『탈북자 문제의 인식』 2, 탈북자·난민·UNHCR, 55.

은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내 탈북자들을 색출하여 강제 송환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 1. 탈북의 원인

북한의 폐쇄적이고 고립된 체제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인권침해와 탄압, 그리고 극심한 경제적 궁핍을 견디지 못하여 탈북을 감행하게 된다.

### 1) 정치적 이유

북한의 열악한 인권은 탈북의 주요 원인이 된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심각한 고문과 모멸적 징벌, 정치범 수용소의 운용, 연좌제와 공개처형, 성매매와 낙태의 강요 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sup>20)</sup> 또한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 출신성분조사와 주민재등록사업을 통해 신분차별을 유지시켜 왔으며, 체제에 저항하거나 불온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거나 공개적으로 폄박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탈북을 감행하게 되는데, 일부는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에 염증을 느끼거나 북한의 체제 자체를 싫어하기에 탈북을 결심하게 된다.

### 2) 경제적 이유

탈북자들 가운데 일부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탈북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북한에서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침체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모순적인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북한에서 200만 명이 넘는 아사자

20) 김강녕, “탈북자의 인권침해실태와 보호방안”, 『통일전략』 6(1), 2006. 8, 43.

의 발생은 전쟁상태에 있는 국가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이 생계형 난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2. 탈북자들의 현실

탈북자들이 북한을 벗어났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탈북자들은 중국이나 제3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숨어 지내게 된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검거와 강제 추방과 더불어 중국 내 탈북자 관련 NGO활동가들에 대해서도 감시를 점차 강화하고, 탈북자에 대한 포상금까지 내걸어 탈북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중국 북동부에서 신분을 숨기고 지내고 있는 탈북자들은 생존을 위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인신매매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의 생존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만약 공안들에게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강제 노동형을 포함하여 사형까지 당할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이들은 중국 등지에서 온갖 부당한 대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약자가 된다.

탈북자들은 중국인 고용주, 브로커, 현상금을 노린 인간 사냥꾼 등에 의해 다양한 협박과 비인권적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sup>21)</sup> 또한 신분이 불안한 탈북여성들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인신매매되어 매매춘의 현장에 내몰리거나 도피처로 중국 현지인의 첩으로 몸을 맡기는 경우도 많다. 악덕 브로커들은 탈북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탈북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데, 신분이 불안한 탈북자들은 이들의 공갈 협박에도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

21) 한희원, “새로운 환경에 따른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탈북자의 난민성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50, 2013. 6, 39.

권 유린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상황이 더 참혹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북한으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

### 3. 난민지위 인정의 문제

탈북자들이 인권을 보호받고 정당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 1) 탈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소위 ‘조용한 외교’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시기의 대북정책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바탕을 두고, 남북 간의 관계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목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탈북자 정책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탈북자는 단지 식량을 위해 국경을 넘은 북한주민으로 여겨, 이들에 대한 처리는 북한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로 간주하였다. 노무현 정부 역시 남북관계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북한의 인권 및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sup>22)</sup>

탈북자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지만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지역관리협정에 따라 탈북자들에 대해 “제네바난민협약”을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또한 탈북자에 대한 난민인정은 중국의 주권사항인데다 우리 정부의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인정 요구가 북한 정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탈북자 문제에 적극 개

22) 광정래·이준웅,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탈북자 문제에 관한 언론의 프레임 연구”, 199.

입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의 견해 차이와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기간에는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의 인권문제에 압력을 가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최근 탈북자들의 숫자도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추세이다.

## 2) 중국의 탈북자 정책

북한주민의 탈북과 제3국으로의 망명은 접경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가장 인접해 있고 상호 교류가 많아 탈북이 가장 빈번이 발생하는 곳이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인접국에 비해 탈북자들에 대하여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난민이나 위임 난민, 궤도 난민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에 대해 보편적인 난민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검거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sup>23)</sup> 심지어 길림성 자치주는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는 중국이 탈북자들에 대하여 국제난민규범을 적용하여 난민으로 인정하고 대우하기 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에 관한 합의”를 우선시하여 적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타릭 라드완(Tarik M. Radwan)은 중국의 탈북자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23) 한희원, “새로운 환경에 따른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탈북자의 난민성에 대한 고찰”, 44. 중국의 이러한 강경한 정책은 1966년 체결된 「조·중 범죄인 상호인도협정」과 「국경지역 업무협정」, 그리고 1993년 11월 12일 제8기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된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길림성 변경관리조례」에 따른 것이다. 임채완·최영관, “중국내 탈북자의 ‘난민적’ 상황과 그 대책: 연변자치주지역 조사를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소”, 140.

지적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어떤 국제법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1951년 체결한 난민협약과 그 부속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적인 의무에 위배된다. 둘째, 탈북자를 경제적 이주자들로 간주하여 난민이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은 억지이다. 국제 난민법상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난민지위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집단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괄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셋째, 최초의 탈북이유가 경제적 곤궁이라 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사후에 난민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국제난민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난민인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나라를 떠날 때의 사유가 아니라,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나 돌아가지 않으려는 사유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당국이 탈북자에 대하여 협약난민으로의 판정이 어렵다면, UN난민고등판무관에게 업무를 위임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UN난민고등판무관과 탈북자와의 접촉자체를 거부하는 중국의 태도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처사이다.<sup>24)</sup>

따라서 탈북자들이 정치적 박해에 근거하여 국제인권법상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할 법적인 근거는 북한이 정치적 비판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전제정권이며, 탈북 자체를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 3)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유럽인권재판소는 1991년에 고문 또는 박해의 공포가 있는 국가에 보호희망자를 귀환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였다.<sup>25)</sup> 비호(Asylum)

24) 한희원, “새로운 환경에 따른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탈북자의 난민성에 대한 고찰”, 46.

란 본국의 추적이 미치지 않는 타국의 영토나 외교공관 등에 들어온 정치적 난민에게 망명을 허용하고 본국에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강제송환금지원칙에 기초하여 난민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실체적이며 제도적인 장치이다.<sup>26)</sup>

논레풀망(non-refoulement,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난민협약 제33조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기구들의 결의를 통해 난민에 대한 국가행동의 기본원칙으로서 재확인하여 온 원칙이다. 이는 누구든지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관습법상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다수 국가의 국내법과 국제문서가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의 원칙이다.

#### 4) 탈북자의 난민 지위 인정 방법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등지에서 은신해 있다가 발각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탈북자들은 매년 수천 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sup>27)</sup> 탈북자의 난민 지위 여부는 탈북동기와 해외체류기간 등이 판단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난민지위의 인정 여부는 개개인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진다. 현실적으로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인데, 첫째 방법은 난민협약상의 난민자격을 얻는 경우이고, 둘째 방법은 유엔난민기구에 의하여 난민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방법이고, 셋째 방법은 북한의 극심한 인권침해와 식량난 등을 근거로 하여 대량난민으로 인정받는 방법이다.

25) 고기복, “EU국가의 난민인정제도”, 51.

26) 이용호,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328.

27) 박은숙 외,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서울: 나눔의 집, 2009), 53.

탈북자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에 의한 박해'라는 요건에 해당될 경우, 협약난민으로 간주된다. 협약난민으로의 인정여부는 탈북자 개개인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즉, 탈북자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에 의한 박해'라는 요건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협약난민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으로 이탈하여 일시 체류한 후 다시 북한으로 귀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협약난민으로 볼 수 없다.

탈북자가 협약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유엔난민기구를 통하여 위임난민(mandate refugee)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중국 정부를 배려하면서 실질적으로 탈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충적 방법으로서, 협약난민의 경우처럼 중국 정부를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탈북자의 보호를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는 탈북자가 임시보호를 요청할 경우 어느 정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일정수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몽골과 동남아시아의 경우 한국공관에 임시보호를 요청할 경우 기본적인 신변안전과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 내의 탈북자들이 북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이주자일 뿐 이지 난민은 아니라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탈북자들이 난민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있다. 우리 정부가 난민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해외의 정착난민들을 수용할 의지가 없으면서 중국에 대하여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sup>28)</sup> 따라서 우리 정부가 먼저 난민문제에 대한 깊

28) 오승진,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57(2), 2012. 6, 109. 한국정

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그들을 존엄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이 조속히 수용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 IV.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 1. 조에와 비오스

아감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부터 현대의 수용소와 난민에 이르기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버려져 배제와 차별받는 인간의 모습을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는 개념으로 분석하면서 생명정치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였다. 아감벤이 보기에 서양 정치의 근본적인 범주는 동지적이 아니라 별거벗은 생명-정치적 존재, 조에-비오스, 배제-포함이며, 정치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언어를 통해 자신에게서 별거벗은 생명을 분리해내며, 그것을 자신과 대립시키는 동시에 그것과의 포합적 배제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체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sup>29)</sup>

아리스토텔레스는 조에(zoé)와 비오스(bíos)를 구분하였는데, 조에가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 단순하게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

부는 1992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 제도를 도입한 뒤 2001년부터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난민 인정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데다, 난민신청자들에게 체류는 허가하지만 취업활동을 보장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난민 기피국가 불명에 빨리 벗어나야” 경향신문 2011년 6월 21일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2005년 난민지위 신청자는 410명으로 2004년의 150명에 비하여 173%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2년 한국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난민지위 심사 신청자 수가 1,143명으로 1993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시행한 이래로 역대최다를 기록하였다. 이 중에는 시리아 난민 146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리아 난민 신청자 중 한국에서 받아들여진 난민신청자는 없다. 남옥정, 「시리아 위기와 난민문제」, 『Homo Migrans』 8, 2013. 6. 95.

29) Giorgio Agamben, 박진우 역, 『호모사케르』, (서울: 새물결출판사, 2008), 45.

면, 비오는 개인이나 집단에 고유한 생활양식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선을 추구하는 가치 있는 정치적 삶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에와 비오스의 구별에 착안해서 아감벤은 조에의 영역에 있으면서도 비오스의 영역에 예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존재를 ‘호모 사케르’ 또는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이라 불렀다.<sup>30)</sup>

호모 사케르로서 제시되는 차별과 배제의 기저에 있는 정체성과 타자성의 문제는 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간의 존재를 드러낸다. 오늘날 생명의 신성함은 주권 권력과 대립되는 절대적인 기본 인권으로 주장되고 있지만, 원래 그것은 생명을 죽음의 권력에 종속시키고 내버려짐의 관계 속에 결정적으로 노출시킨다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sup>31)</sup>

## 2. 벌거벗은 생명

아감벤에 따르면, 호모 사케르는 절대적인 살해 가능성에 노출된 생명, 법과 희생 제의의 영역 모두를 초월하는 어떤 폭력의 대상을 가리킨다. 즉 성스러운 생명이란 정치적 비오스도 자연적 조에도 아니며, 조에와 비오스가 서로를 포함하고 배제하면서 서로를 끌어들이고 있는 구분 불가능한 영역이다.<sup>32)</sup>

호모 사케르란 고대의 로마법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직역하면 ‘성스러운 인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인민에 의해 고발당한 자를 ‘성스럽다(sacer)’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를 희생 제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은 살인죄로 처

30) Giorgio Agamben, 김정환 역, 『벌거벗은 생명의 윤리』, 98.

31) Giorgio Agamben, 『호모사케르』, 177.

32) 같은 책, 188.

벌받지 않는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사악하고 불결한 사람을 가리켜 성스럽다고 말하는 관습이 생겨나게 되었다.<sup>33)</sup> 호모 사케르는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되지만 누구나 죽일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물로 바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나 죽일 수 있다는 것 사이에는 분명 모순이 있다. 성스럽기 때문에 희생될 수 없다면, 신성 모독을 범하지 않고서는 호모 사케르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감벤에 따르면, 호모 사케르는 공동체의 법적, 종교적 질서로부터 추방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희생 제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종교 질서에서의 배제), 그를 죽이는 행위가 살인죄를 구성하지도 않는다(법질서에서의 배제).<sup>34)</sup> 따라서 호모 사케르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모든 종교적, 법적 의미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를 살해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기에 인간 법의 구속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으며, 그의 희생은 허용되지 않기에 신의 법 영역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다.<sup>35)</sup> 그런 점에서 호모 사케르는 성스러운 동시에 저주받은 자이며, 그 자체로 이중적 배제에 종속되어 있는 독특한 존재론적 위치를 지닌다.

고대에서 ‘성스럽다’는 말은 종교적 성스러움 이전에 서양의 정치 공간을 구성하는 의미로 제시되었다. 이는 법질서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던 벌거벗은 생명이 서서히 정치 영역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배제와 포함, 외부와 내부, 비오스와 조제가 무엇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채 구분 불가능한 영역으로 빠져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모 사케르의 지위를 규정하는 것은 본래 그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성함의 본래적인 양가성이 아니고, 그가 사로잡혀 있는 이중적 배제 그리

33) 같은 책, 156.

34) 김태환, “예외성의 철학 –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통치 권력과 벌거숭이 삶』”, 『문학과 사회』 제17권 3호 2014, 1285.

35) 김상운, “아감벤에 관하여”, 173.

고 그가 노출되어 있는 폭력의 특수한 성격이다.<sup>36)</sup>

호모 사케르는 이중적 배제로 인해 언제든지 잔혹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이며, 공동체 내에서 어떤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벌거벗은’ 가련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호모 사케르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삶에서 아무런 보호도 없는 ‘벌거벗은 삶(la nudavita)’으로 전락하였음을 의미한다. 법에 의해 정치 영역의 바깥이나 변두리로 유기된 벌거벗은 삶은 오늘날 외부와 내부, 삶과 법이 서로 구별될 수 없게 만드는 모호한 경계지점에서 발생하게 된다. 벌거벗은 삶은 모든 긍정적 관계가 벗겨진 삶이며, 따라서 보존될 가치도 없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삶이다.

### 3. 예외상태

벌거벗은 삶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주관하는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문명화된 세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는 문명의 한복판에 예외상태로서 존재하는 자연 상태이며, 법은 호모 사케르에게 등을 돌림으로써 자신의 위력을 극대화시킨다. 이 때문에 호모 사케르는 법질서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바로 그 사실을 통해 법질서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에 따라 법질서에서 배제됨으로써 법질서 속에 간혀 있는 역설이 성립된다.<sup>37)</sup>

아감벤에 따르면, 무언가를 오직 배제만을 통해서 끌어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관계를 예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법과 호모 사케르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예외 관계이다. 그리하여 예외자로서 호모 사케르는 법의 영토와 무법 지대, 공동체의 안과 바깥 사이의 미결정 영역을 떠

36) Giorgio Agamben, 『호모사케르』, 175.

37) 김태환, “예외성의 철학”, 1287.

돌게 된다.

난민이 지닌 특성은 경계인의 신분으로서 항상 예외상태로 간주된다  
는 점이다. 예외상태는 법질서 바깥에 있는 것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이를 정의하는 문제는 하나의 문턱 또는 내부와 외부가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식별하지 못하는 구분 불가능한 영역에 놓여 있다.  
규범의 효력 정지는 규범의 폐지를 의미하지 않으며, 규범의 효력 정지  
가 만들어내는 아노미의 영역은 법질서와의 관계를 잃지 않는다.<sup>38)</sup>

#### 4. 호모 사케르와 난민

난민은 자국 법의 보호 영역을 벗어나 있기에 별거벗은 생명이다. 난  
민은 국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신성하고 존엄한 생명이어야 함에도,  
버려져도 상관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 이로 볼 때, 난민은 정치 영역  
에서 그동안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별거벗은 생명의 실체를 드러내는  
매개가 된다. 난민들은 그동안 시민이라는 가면 뒤에서 실상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 가면을 벗겨버리고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게 만든  
장본인들이라 할 수 있다.

근대 국가에서는 인간 생명은 귀중한 가치이며, 국가가 반드시 지키  
고 보호해야 할 존엄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국적이 부여하는 시민권  
에 포함되지 않는 난민들은 오히려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난민은 시민권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떤 근거도, 어떤 실체도 없이  
국가의 주권 바깥에 존재하는 자들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난민  
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인간 존재로 인정될 수 있는 자율적인 공  
간은 없다. 난민은 항상 귀화 또는 본국송환의 가능성을 지닌 일시적인  
주변인일 뿐이다. 따라서 난민이 되는 순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

38) Giorgio Agamben, 김항 역, 『예외상태』, (서울: 새물결, 2009), 52.

적 지위나 권리는 생각할 수 없게 된다.

호모 사케르로서 난민은 그의 실존 전체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벌거벗은 생명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끊임없이 도망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피난처를 찾아내지 못하면 생존자체도 쉽지 않다. 난민들은 매 순간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요소들에서 도피할 수 있는 장소나 수단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점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존재들이다.

## V. 레비나스의 타자를 위한 윤리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의 혹독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던 레비나스는 윤리를 제일 철학으로 삼았으며, 이 윤리는 타자의 얼굴로 나아가는 것임을 강조하였다.<sup>39)</sup> 그의 주요 관심은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 너머의 선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책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었다.<sup>40)</sup>

39) Emmanuel Levinas, 양명수 역, 『윤리와 무한- 필립 네모와의 대화』 (서울: 다산글방, 2000), 13. 그는 “신의 계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 간주하려는 그 누구도 경계하면서 그는 아우슈비츠 이후로 더 이상 설교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미카엘 드 생 쉘롱, 김용권 역, 『엠마누엘 레비나스와 그의 대답』 (서울: 동문선, 2008), 18.

40) 레비나스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일으킨 전쟁은 본질적으로 타자를 동일자(나)로 환원하는 서구 존재론의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유래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고 보면서, 나라는 동일자로 결코 흡수되지 않는 타자가 있음을 드러내고, 그 타자에 대해 내가 가지는 윤리적인 책임성이 나의 초월을 가능케 하는 근본임을 보이려고 하였다. Emmanuel Levinas,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2003), 193-194.

## 1. 타자의 얼굴

레비나스에게 있어 형이상학의 출발점은 얼굴에 있으며, 이 얼굴은 윤리적 개념과 분리될 수 없다. 그에게 타자의 얼굴과의 만남은 타자를 주제화(thematize)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는 윤리적 책임을 의미한다. 타자의 얼굴은 무한의 자취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존재를 넘어 들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의 이채로움은 나를 타자의 얼굴로 향하게 자리매김하는 데 있다.<sup>41)</sup> 얼굴은 그저 몸을 구성하는 일부가 아니다. 얼굴은 사물의 경험적 대상으로서의 얼굴이 아니며, 동시에 현상이 아닌 초월적 성격을 갖는다.<sup>42)</sup> 얼굴은 단순히 눈, 코, 이마 등의 집합체가 아니다. 얼굴은 물론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물질적 의미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존재를 지각하는 면에서 볼 때는 새로운 차원을 통해 얼굴의 의미가 밝혀지게 된다.<sup>43)</sup>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에서 타자의 두 가지 얼굴 형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첫째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고아, 과부 등의 얼굴이다. 두 번째로 주인의 얼굴 혹은 힘을 가진 상대방의 얼굴이다. 양자의 얼굴 모두 타자의 타자성을 결정하는 비대칭성, 비균등성, 비환원성을 보여 주고 있다.<sup>44)</sup> 얼굴은 타자가 순수하게 나에게 드러나는 순간이요, 존재론적 비대칭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윤리적 언어로 나에게 드러나는 매개이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환원할 수 없는 타자라고 보았다. 얼굴의 현현은 무한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신적 계시와 유사하다. 그는 인간의

41) Emmanuel Levinas, 김연숙·박한표 역, 『존재와 다르게』 (고양: 인간사랑, 2010), 33.

42) 박원빈, 『레비나스와 기독교』, (서울: 북코리아, 2010), 62.

43)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자아의 포기, 별거벗음, 가난, 주름진 피부, 늙음, 죽는 것을 의미한다. Emmanuel Levinas, 『존재와 다르게』, 168.

44) 박원빈, 『레비나스와 기독교』, 85.

얼굴이 인간성과 무한의 흔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얼굴의 현현에서 중요한 것은 아름답거나 추함, 젊거나 늙음의 기준에 따른 얼굴 모습이 아니다. 이때 인간의 얼굴은 허약함과 불행에 대한 준엄한 상기만큼이나 인간성의 흔적과 반영을 그 안에 지니고 있는 얼굴이며, 무엇보다도 고통과 죽음을 환기시키고 상기시키는 얼굴이다.<sup>45)</sup> 얼굴은 숨김 없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직함이 있다. 얼굴의 살갗은 벌거벗었고 혈벗은 채로 있다. 또한 얼굴은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다.<sup>46)</sup>

레비나스에게 있어 타자는 성서에서 제시되는 나그네와 같은 개념이다. 타자의 얼굴은 가련한 나그네로, 완전히 파산하여 삶의 기반이 뿌리채 뽑힌 자의 얼굴로 나에게 나타난다. 성서는 이런 부류를 나그네, 고아와 과부로 묘사하고 있다. 나그네는 오늘날 국제사회를 떠도는 난민들이며, 고아와 과부가 상징하는 바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난민의 실존적 위기와 맞닿아 있다.

레비나스는 얼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장소라고 말한다. 진리는 신적인 얼굴만이 홀로 빛난다는 것이다. 진리는 자유롭게 허공을 떠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얼굴 자체이다. 신은 그 스스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그 빛을 다시 그에게로 되돌린다. 신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릴 때에만 우리는 가까스로 그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그 자체로서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며, 신 안에 있는 진리 그 자체를 깨닫는 순간이다.

타자의 얼굴을 향하는 것은 타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우리는 난민들의 얼굴을 바로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자신들이 수용되기를 원하는 가련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

45) Michaeel de Saint-Cheron, 『엠마누엘 레비나스와의 대답』, 63.

46) Emmanuel Levinas, 『윤리와 무한-필립 네모와의 대화』, 110.

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게 된다.

## 2. 타자에 대한 책임

레비나스에게 이웃에 대한 책임은 주체성의 본질적이고 으뜸가는 근본적 구조이다.<sup>47)</sup>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타자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나를 보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타자와의 대면을 통해 그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신의 음성을 듣는 방식이 된다. 타자의 얼굴을 포착하는 것은 책임의 관계이며 신의 말씀이다. 타자의 얼굴을 받아들이는 응대는 신에 대한 존중인 동시에 타자에 대한 존경을 연장한다.

타자는 모든 것이 박탈된 궁핍한 얼굴, 고통받는 얼굴로 나에게 현현한다.<sup>48)</sup> 우리는 얼굴의 현현으로부터 어떤 초월에 이르게 되는데, 이 초월은 신과의 관계로 더 이상 규정되지 않고 공허와 책임과의 관계로, 나아가 한 존재로부터 다른 존재로 넘어가는 사랑의 관계로 규정된다.<sup>49)</sup>

버틀러는 레비나스의 ‘얼굴’(face) 개념을 차용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윤리의 방향을 제시한다. 타자의 ‘얼굴’은 단순히 말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 늘어뜨린 어깨, 길게 뻗은 목과 같은 몸의 부분들을 통해 말로 표현되지 않은 비명, 울음, 흐느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sup>50)</sup> 타자의 ‘얼굴’은 타자가 놓여있는 극도의 위태로움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윤리적 책임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요청의 성격조차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난민들과 같은 타자의 고통과 흐느낌을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기꺼이 그들을 환

47) Michael de Saint-Cheron, 『엠마누엘 레비나스와의 대답』, 66.

48) Emmanuel Levinas, 『존재에서 존재자로』, 216.

49) Michael de Saint-Cheron, 『엠마누엘 레비나스와의 대답』, 59.

50) 조주현, “생명정치, 벌거벗은 생명, 페미니스트 윤리”, 『한국여성학』 24권 4호, 2008, 52.

대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3. 케노시스적 연대

레비나스는 주체성을 타자를 받아들임, 또는 타자를 대신한 삶 등으로 정의한다. 그는 인간의 삶은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면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특히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와 책임을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sup>51)</sup>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다. 난민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타자의 얼굴에 들어 있는 요청은 주고 섬기라는 요청이며, 더 나아가 그들을 홀로 두지 말라는 명령이다.

레비나스가 강조하는 진정한 타자를 위한 책임의 윤리는 타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타자제로의 노출은 자기중심적인 이해타산을 버리는 것이며, 고통에 스스로 사로잡히는 것이다.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과의 만남은 나의 존재에 내포된 코나투스(존재 안에 머무르려는 경향)를 더 이상 본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만든다.<sup>52)</sup> 그리하여 나의 코나투스를 버리고 타인을 위해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수고를 하게 만든다.

타자의 얼굴이 갖는 이질성과 상처받기 쉬움을 구원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환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받았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는 화해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 상처입기 쉬움, 그리고 고통과 함께 하는 케노시스적 연합을 보여

51) Emmanuel Levinas,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2001), 6-7.

52) Emmanuel Levinas, 『존재에서 존재자로』, 218.

주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자기 비우심을 통해 타자를 위한 무한한 윤리적 책임을 자각하게 된다. 자기를 비움으로서 자신은 희생하더라도 타자가 삶을 영위한다면 미래는 지속되는 것이며, 이 미래는 무한히 열린 미래로 확장되는 것이다.

케노시스적 연합은 고통을 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연대하는 특징이 있다. 케노시스에 내재한 이러한 연대적 성격은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타자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촉구한다. 이 시대에 가장 상처받기 쉽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난민과 함께 아파하고 연합할 뿐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왕국을 이룰 수 있다.

## VI. 탈북자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방안

현재 제3국에 머물러 있는 난민들의 운명은 그들의 바람대로 귀화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본국에 송환당하거나 혹은 어느 나라에도 수용되지 못한 채 케도 난민상태로 방황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귀화이다. 어쩔 수 없이 난민이 발생하는 현실 상황을 감안한다면 난민들은 귀화나 망명을 희망하는 나라에 수용되어 정착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난민들의 귀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나 NGO, 혹은 사회적 기업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탈북자들은 중국 등 제3국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으며 절박한 생활을 지탱하고 있다. 탈북 난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탈북자들의 귀화나 망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힘쓸 필요가 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재중 탈북자와 관련하여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에 실제 도움이 되는 대책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과 전략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중국 내 탈북자의 지위를 경제적 난민이라는 불법체류자로부터 정치적 난민으로 부각시켜 난민의 성격을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제법상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정치적 박해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UNHCR 해당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난민지위판정 여부는 중국의 협조를 얻는 UNHCR에서 하게 된다. 따라서 UNHCR이 중국을 설득하여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sup>53)</sup> 탈북자들이 난민의 지위를 얻게 되면, 북으로의 강제소환을 막을 수 있다.

셋째, 중국 내 탈북자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중국을 설득해야 하며,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정부가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적인 비정부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체제를 모색하면서 중국 내 탈북자 및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자의 처벌 시 초래되는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UNHCR과 국제인권 NGO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중국에서 탈북자의 인권침해 사례와 강제송환 시 폭언, 구타, 고문의 정치적 처벌 사례를 증명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sup>54)</sup>

탈북자문제의 해결은 남북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에 남북의 관계증진을 통해서도 문제해결에 한걸음 더 나아가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간의 외교적 교류를 통하여 북한 내 인권억압상황을

53) 정주신, 『탈북자 문제의 인식. 2, 탈북자·난민·UNHCR』, 87

54) 같은 책, 58.

개선시키고 탈북자들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VII. 나가는 말

위에서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와 레비나스의 타자를 위한 윤리를 통해 탈북 난민의 문제를 조명하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보았다. 그 동안 탈북 난민의 문제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매우 부족하였다. 이들에 대한 더 이상의 외면이나 방관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탈북 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앞으로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난민은 박해로 인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며 우리에게서는 난민을 보호할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난민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자기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착 지원프로그램들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감벤을 통해서 타자가 처한 비참하고 굴욕적인 현실에 대해 자각하게 되며, 레비나스를 통해서 타자에 대한 연대와 책임을 느끼게 된다. 호모 사케르는 무기력하게 경계 밖으로 내몰린 힘없는 생명을 드러낸다. 또한 현재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부조리가 단순한 우연이나 예외가 아니라 법질서의 예외성이라는 역설적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고통받는 타자와의 만남은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아낌없이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적 영성을 실천하는 계기가 된다. 탈북자들은 정치적 굴레와 핍박을 벗어난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며, 그들과 공존하고 상생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예수가 친히 찾아 만나고 친구가 되어주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모두 이 시대의 호모 사케르들이라 할 수 있다. 예수는 호모 사케르와 함께 함으로써 본을 보여주었다. 예수가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받아들이고 만든 공동체 속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든 차별은 불가능하며, 이전에 사회를 지탱하던 금기들은 무효화된다.

단한 사회가 차이를 차별로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배제한다면, 열린사회는 차이를 다양성으로 인식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바람직한 공동체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소외된 자들을 죽음과 폭력에 노출시키고, 그들을 배제하는 단한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화의 공동체이다.

## 참고문헌

- 고기복. “EU국가의 난민인정제도: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7(1), 2007. 6.
- 곽정래·이준웅.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탈북자 문제에 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조선일보』·『한겨레』 등 5대 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6), 2009. 12.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과 난민』. 서울: 한학문화, 2005.
- 김강녕. “탈북자의 인권침해실태와 보호방안”. 『통일전략』 6(1), 2006. 8.
- 김수진. “무장한 세계화와 난민”.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20. 2007. 5.
- 김태환. “예외성의 철학 —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통치 권력과 별거숭이 삶』”. 『문학과 사회』 17(3), 2014. 1285.
- 길준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0(4), 2009. 11.
- 남옥정. “시리아 위기와 난민문제”. 『Homo Migrans』 8, 2013. 6.
- 박원빈. 『레비나스와 기독교』. 서울: 북코리아, 2010.
- 박은숙 외.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서울: 나눔의 집, 2009.
- 박종일·이태정·유승무·박수호·신종화. “난민의 발생과 국민국가의 대응: 난민수용 논란을 통해 본 한국의 이주자정책”. 『민주주의와 인권』 13(1), 2013. 4.
- 송영훈.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4(1), 2014. 3.
- 아렌트, 한나.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1-2』. 과주: 한길사, 2006.
- 양창아.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의 시작: 배제된 자들의 관점과 정치적 경험의 회복”. 『코기토』 71, 2012. 2.
- 오승진.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57(2), 2012. 6.
- 이병렬·김희자.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 『경제와사회』 90, 2011. 6.
- 이신화. “세계 난민문제 해결 사례와 탈북자 문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3. 12.

- 이용호.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52(2), 2007. 8.
- 임채완·최영관. “중국내 탈북자의 ‘난민적’ 상황과 그 대책: 연변자치주지역 조사를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13(2), 2001. 11.
- 정주신. 『탈북자 문제의 인식. 2, 탈북자·난민·UNHCR』. 대전: 프리마북스, 2011.
- 조주현. “생명정치, 벌거벗은 생명, 페미니스트 윤리”. 『한국여성학』 24권 4호, 2008.
- 한희원. “새로운 환경에 따른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탈북자의 난민성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50, 2013. 6.
- Agamben, Giorgio. 『호모사케르』. 서울: 새물결, 2008.
- \_\_\_\_\_. 『예외상태』. 서울: 새물결, 2009.
- Chimni, B. S. *International Refugee Law*, London : Sage Publications, 2000.
- Levinas, Emmanuel.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1996.
- Levinas, Emmanuel. 양명수 역. 『윤리와 무한- 필립 네모와의 대화』. 서울: 다산글방, 2000.
- Levinas, Emmanuel.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2003.
- Levinas, Emmanuel. 김연숙·박한표 역. 『존재와 다르게』. 고양: 인간사랑, 2010.
- Foster, Michelle.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Socio-Economic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Saint-Cheron, Michael de. 김웅권 역. 『엠마누엘 레비나스와의 대담』 서울: 동문선, 2008.
- 경향신문 2011년 6월 21일자.
- 동아일보 2015년 10월 28일자.

논문투고일: 2016년 2월 29일  
심사개시일: 2016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 2016년 4월 09일

---

• 국 문 초 록 •

---

본 소고에서는 탈북자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점들을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를 통해 조명하면서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모티브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제3국에서 겪는 인권 유린의 실태를 살펴보고, 탈북자들이 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난민은 삶의 터전을 잃은 뿌리 뽑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뿌리 뽑힘은 이제까지 살던 곳에서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 상황뿐 아니라, 이제까지의 모든 관계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렌트는 한 민족, 한 영토, 한 국가라는 민족 국가의 틀이 사람들을 무국적 난민, 즉 민족 국가의 구성적 외부로 추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탈북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시급하다. 아감벤에 따르면, 호모 사케르는 절대적인 살해 가능성에 노출된 벌거벗은 생명임과 동시에, 법과 희생 제의의 영역 모두를 초월하는 어떤 폭력의 대상을 가리킨다. 벌거벗은 삶은 모든 긍정적 관계가 벗겨진 삶이며, 따라서 보존될 가치도 없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삶이다. 레비나스에게 있어, 타자의 얼굴과의 만남은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의미한다. 타자의 얼굴은 무한의 자취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존재를 넘어 들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타자의 얼굴이 갖는 이질성과 상처받기 쉬움을 구원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환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받았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는 화해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타자의 윤리를 통하여 우리는 탈북자 문제를 새롭게 조망하고 이를 통해 탈북자들과 함께 더불어 공존하고 협력할 가능성을 찾게 된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바람직한 공동체는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소외된 자들을 죽음과 폭력에 노출시키고 그들을 배제하는 닫힌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행복을 향유하는 열린 공동체이다.

**주제어:** 난민, 탈북자, 비호, 강제송환금지원칙, 호모 사케르, 타자의 윤리

---